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688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0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10. 18.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 2022.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서,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통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공동체 육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효율적 운영코자 지역 전문 단체 위탁 필요
-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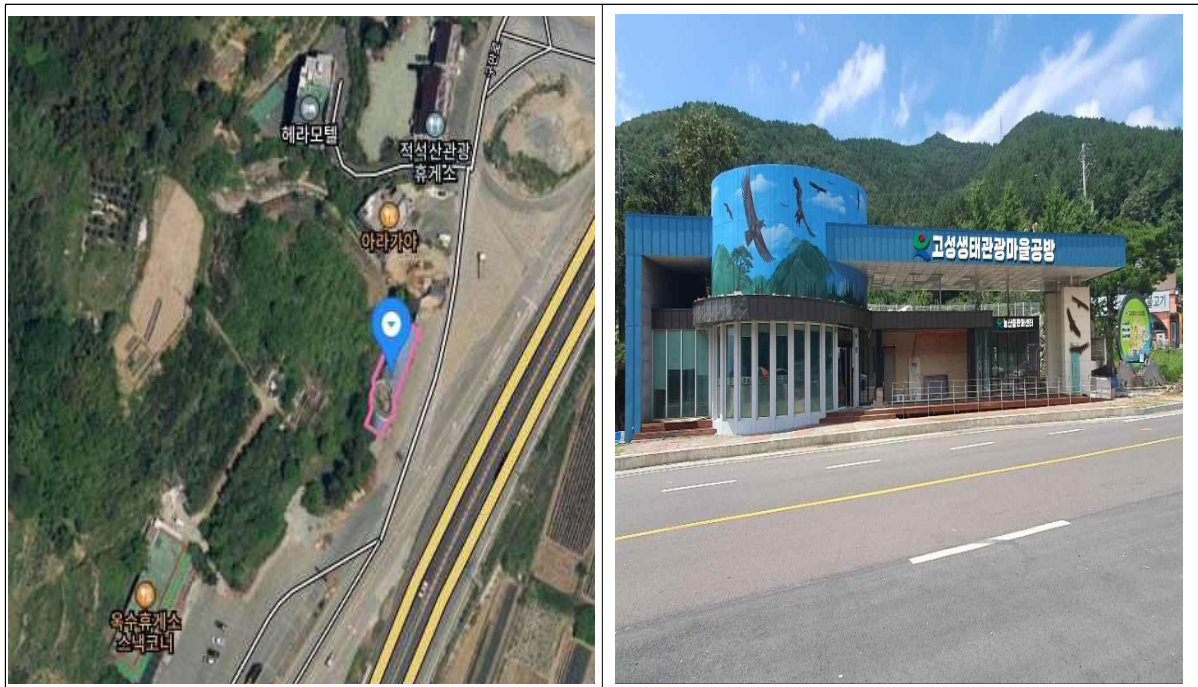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위탁운영)

4. 위탁 내용

- 시설현황: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건축물 1동
(舊, 관광안내소)
 - 설치장소: 회화면 남해안대로 4071
 - 설치규모: 233.31㎡ 정도
 - 리모델링 추진: 2023.03. ~ 2023. 09.
 - 사업비 : 300백만원(특교세 100백만원, 군비 200백만원)
 - 시설구성: 생태관광 홍보 전시실, 사무실, 교육장, 지역특산물판매장

○ 위탁개요

- 위탁 기간: 2024. 01. 1. ~ 2025. 12. 31.(2년)
- 위탁 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위탁 사무: 고성군 생태관광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공간 지원
 - 고성군 지역 특산물 판매 및 기념품 판매등 지원
 - 생태관광 관련 전시 · 홍보 안내 및 관광정보 제공
 -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생태관광마을 공방 시설물 유지 관리
- 위탁 운영비: 연간 50백만원(2024년 기준)---불임과 같음
- 사업장 위치도 및 현황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불임참조

-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성으로 공적 서비스의 다양성 추구 및 직영과 비교 운영비용 절감등 경제적 효율성 효과등 지역단체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적정

6. 향후 추진계획

- 2023. 10.: 수탁자 공개모집
- 2023. 11.: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3. 12.: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4. 01.: 민간위탁 실시

7. 기대 효과

- 고성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인력 활용 등 활성화 기대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 내용 검토

-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
 -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방의 관리 및 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태관광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생태관광 안내 및 프로그램 등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함.
-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
 - 위탁 기간을 2024. 1. 1. ~ 2025. 12. 31.(2년간)으로 한 것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5년 이내에 해당하여 규정상 적정함.
-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
- 위탁사업비의 적정성
 - 위탁사업비는 2024년 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 50,000천 원으로, 상시근로 1명은 시설 관리 및 특산물 판매 인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동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2024년 기준으로만 제출하였음.

○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태관광 마을공방 관리 운영을 생태관광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민간위탁 기간이 안정된 운영을 위한 적정기간인지와 연도별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임.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10. 토 론 : 없음.

11. 심사결과 : 2023. 10. 18. 원안가결